GLOBAL
METHODIST CHURCH

총회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 삶을 위한 조직 계획 및 언약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개정: 2025년 2월 17일 / 2025년 12월 2일 / 2026년 1월 26일)

머리말

히브리서 12장 15절 등 성경의 권면에 따라, 존 웨슬리는 일찌기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격려했으며, 1744년 그의 동생 찰스와 몇몇 목회자와 함께 모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말을 듣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교리와. 장정, ¶701). 그 전통의 영적 계승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교회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모두의 공의을 위해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또한 회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사도행전 15:28),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로마서 12:2). 따라서 총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돌보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조직 계획

I. 오프닝 세션

글로벌 감리교회는 총회 위원단이 추천하고 연대 협의회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총회를 개최하며,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위원단이 지정한 감독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A. 대표단 및 대의원 소개. 공식 명단 발표는 등록 절차를 통해 완료됩니다.

B. 총회의 투표 규정을 설정합니다.

C. 총회 위원단 보고.

D. 총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우리 공동체 생활을 위한 조직 계획 및 언약을 채택합니다. 계획 및 언약이 채택되기 전에는 회의장에서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E. 총회 총무가 연대 협의회에 의해 임시로 임명된 경우(¶704.2, 계획 IV), 연대 협의회의 추천으로 총회 총무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총회 폐회와 함께 직무를 시작하게 될 총무의 선출은 총회의 어느 회기에서든 실시될 수 있습니다.

F. 위원단에서 제안한 안건의 채택.

G. 기타 업무

II. 의장

총회의 모든 본회의는 의제위원회(¶704.1)가 지정한 대로 글로벌 감리교회의 현직 및 명예 감독들이 인도합니다. 입법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감독 중 한 명이 소집하며, 이 감독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아래 참조).

III. 총회 위원단

총회위원단은 총회 준비 전반을 관할하며, 총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총회에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연대협의회에 총 대의원 수를 추천하고, 전 세계 교회에 대한 대의원 수의 공평한 할당 공식을 추천하며, 성공적인 총회 운영을 위한 물류 준비를 조율할 것입니다. 연대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 사이 기간에 본 조직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총회 개회 기간에 비준되어야 합니다.

IV. 총회 총무

총회는 연대 협의회의 추천으로 총회 총무를 선출합니다. 새 총무의 임기는 총회 폐회 후 시작되며, 이전 총무가 전환 기간 동안 총회 폐회 후 행사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총무는 총회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주재 감독 및 연대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총무는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 직원의 도움을 받아, 매일 의사 일정을 실행하고 청원과 결의안을 다루는 입법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총무는 총회 위원단과 협력하여, 총회 운영과 심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대의원이 총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또한, 총무는 총회 행정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아래와 같이 직권상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직책은 유급 직원일 수 있습니다. 총회 회기 사이에 총무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연대협의회는 다음 총회까지 활동할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V. 일정계획

총회에서 입법위원회 회의를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채택한 결정으로 인해, 코스타리카에서 계획되었던 일정과는 전혀 다른 시간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대의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교회 수와 정규직과 동등한 목회자 수에 따라 배분됩니다. 대의원은 2026년 4월 1일까지 선출되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청원은 2026년 1월 5일부터 접수됩니다. 청원 제출 마감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VI. 신흥 지역 대표자

조직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 연회로 소집될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회위원단이 '신흥지역'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신흥 지역은 과도기적 연회 자문팀 혹은 기타 지도 체계 및 충분한 교회와 목회자를 갖추어야 연회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신흥 지역은 대표 인증 마감일까지 총회에 목회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각 1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A. 총회 본회의에 방청객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나, 제한 구역 내 착석이 불가하며 발언권이나 표결권은 없습니다.

B. 본인이 선택한 입법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되, 표결권은 없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입법위원회에서 허용된 최대 대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 총회 예산에서 교통, 식사, 숙박 비용 전액을 지원 받음.

VII. 총회의 위원회들

A. 행정 관리 위원회

1. 의사일정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온 총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 각 입법 위원회 의장들과 총회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됩니다. 행정 관리 위원회는 각 입법 위원회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총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청원 심사를 포함하여 본회의의 일일 순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각 본회의의 사회자를 선정합니다. 의제는 각 위원회에서 한 번에 하나의 우선순위 안건을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데, 한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청원 의제들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 관리 위원회는 각 본회의가 끝날 때마다 다음 회의에서 다룰 잠정 의제를 발표합니다.
2. 자격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온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 총회 서기와 협의하여 자격 승인과 대의원 좌석에 대해 모든 사항을 결정합니다.
3. 참조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온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 접수된 모든 청원 및 결의안을 해당 입법 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청원이나 결의안에 대한 청원 비서의 유효성 판정을 확인합니다.
4. 공보 위원회는 3명의 대의원과 총회 서기로 구성되며, 매일 회의록을 심의·승인하고, 총회 후 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청원을 장정 내 다른 조항과 조정합니다.
5. 공천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온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 다양한 총회 위원단과 협의회 위원으로 봉사할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B. 행정 위원회 구성원

1. 행정 위원회 회원 자격은 2024년 총회에서 대의원으로 봉사했고 2026년 총회에도 대의원으로 참석하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812.2g).
2. 발언권과 표결권이 있는 8명의 정규 위원 외에, 2024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연회에서 파견된 목회자와 평신도 각 1명(자격, 참조, 공보[3명 외], 공천 위원회)은 발언권만 가지며 표결권은 없습니다.
3. 행정위원회 위원은 총회 개회일로부터 최소 209일 이전에 각 대표단에 의해 추천되어야 합니다 총회 위원단은 대표단에서 제출한 후보자 중 각 위원회별로 후보자 리스트를 선정하고(¶812.2g), 교회의 지역별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행정 위원회 위원 선출은 총회 180일 전까지 연대 협의회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도 입법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C. 입법 위원회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8개의 입법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제출된 청원의 수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연대 협의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두 개의 입법 위원회를 합칠 수 있으며, 하나의 입법 위원회를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총회준비 위원단은 각 총회에 정해진 대의원 수에 따라 입법 위원회의 최소 및 최대 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대 협의회에서 임명한 청원 비서는 제출된 각 청원의 처리 결과와 근거(채택, 미채택, 회부)를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총회 의사

일정에는 각 입법위원회에 나열된 안건 외에도 입법위원회가 향후 총회를 위한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 그룹 또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입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교리와 성례전** | 교리적 성명; 100번대 전체 조항; ¶¶412-421
2. **사회적 증언** | 사회적 증언 성명 및 결의안; 300번대 전체 조항
   *(*이러한 성명은 모두 교리와 장정 *¶208.13-14*에 따라 본회의에서 *75%* 이상 찬성 투표가 필요함*)*
3. **개체 교회** | ¶¶401-411, 422-448, 450-456
4. **사역** | 500번대 전체 조항
5. **감리직** | 600번대 전체 조항
6. **총회** | 모든 700의 단락; 연회 및 지역회의 경계
7. **헌법, 연대 조직, 재정** | ¶449, 200번대, 800번대, 1000번대 전체 조항
8. **사법 행정** | 900번대 전체 조항 및 사법 절차

D. 입법 위원회 멤버십

각 연회 대표단 내에서, 각 대의원은 어느 입법위원회에서 봉사할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는 총회 개최 12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입법 위원회 구성은 대의원의 선호, 최소 및 최대 위원 수, 그리고 성별, 인종, 민족, 지역 등 다양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총회 위원단에서 결정합니다. 입법 위원회는 평신도 55% 또는 목회자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배정은 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E. 입법 위원회를 위한 절차

1. **회의 전 회의** — 입법 위원회는 총회 전에 75~60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모여 임원을 선출하고 회의 진행 교육을 받습니다. 선출 직후, 임원들은 온라인 회의로 교육을 받고 입법 위원회 업무 조직 및 계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임원들 -** 첫 회의는 현직 또는 명예 감독에 의해 주재됩니다. 이후 회의는 선출된 위원회 임원들이 주재합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간사와 필요시 분과위원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선거는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글로벌하고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리더십이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총회준비 위원단은 입법위원회 임원이 선출된 이후 각 위원회의 정기 회의 시작 이전에, 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3. **회의 진행 규율 위원** — 가능하면 각 입법 위원회에는 총회 대의원이 아닌 자원봉사 회의 진행 규율 위원이 배치됩니다. 회의 진행 규율 위원들은 총회 개회 전에 열리는 온라인 회의 등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위원회가 우리의 공동 삶을 위한 언약과 회의 규칙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다. 또한 이 담당자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위원회 절차에 대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4. **첫 회의 소개** — 입법 위원회 각 위원은 총회 개최 120일 전, 위원회 선호도 제출과 동시에 100단어 서면 약력을 총회 총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 소개서에는 사진, 교회와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요약, 관심 분야, 경험 및 전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개서에는 해당 인물이 입법 위원회 임원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후 총무실에서는 각 위원의 서면 소개서를 번역하여, 본 회의의 최초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될 때, 각 위원은 자신의 이름, 거주지, 평신도 또는 목회자 신분, 연회 또는 지방을 밝히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5. **정족수** — 입법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논의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정족수는 위원회 위원의 1/2로 구성됩니다. 각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명단 호명이 이루어집니다. 출석 및 결석 기록은 각 회의가 시작될 때 위원장 또는 그 지정인이 위원회 기록을 위해 발표합니다.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회의 날짜 설정** — 각 입법위원회의 첫 온라인 회의 일시 선정은 위원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버탕으로 총회 위원단에서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총회위원단은 안정적인 인터넷과 필요한 기술(기기 포함)을 갖춘 중앙 집결 장소를 마련하여, 해당 여건이 부족한 대의원과 예비대의원들이 그곳에 모여 회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의 시간 및 날짜에 대한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의원이 입법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표단장은 대리 대의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안건** — 온라인 회의 공지에는 서면 안건과, 해당 안건에 관계된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준비한 모든 자료가 포함됩니다. 위원회 회의 안건이 게시되어 배포된 후에는, 비본질적인 안건(의장이 결정한 것 같은)은 해당 회의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상정할 수 없습니다.

8. **비공식 토론** — 이의가 없거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장은 안건 심층 논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로버트 회의 규칙 적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들리도록 하고, 특정인의 의견이 논의를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안건 처리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의장은 정식 심의를 위해 로버트 회의 규칙 적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9. **사안을 표결에 부치기** — 의장이 동의안, 청원 또는 개정이 충분히 토론되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원, 동의안 또는 개정에 대해 표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토론 연장에 대해 표결하지 않는 한 즉시 표결이 진행됩니다. 청원, 동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토론 없이 진행됩니다. 토론 계속 동의는 해당 청원, 동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 전에 적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토론을 계속하려면 과반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회원들은 스스로 발의하여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하고 동의안, 청원 또는 개정안 처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질문 종결합니다).

10. **투표 결과 공개 발표** — 위원회가 비절차적 조치, 청원 또는 동의안(또는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실시한 투표 결과 및 총 투표 수는 즉시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하고, 본회의 제출을 위해 총회 서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1. **위원회 회의 공개** — 입법 위원회 온라인 회의는 녹화되어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12. 위원회 회의록

    a. 위원회의 활동 기록은 정확하게 회의록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회의록과 해당되는 경우 소수 의견 보고서는, 조치가 이뤄진 당일 오후 6시까지 총회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 날 일간 저널에 게재됩니다. 위원회 회의록 외에도, 위원회는

회의 중 토론에서 제시된 모든 서면 자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서면 문서는 교단 웹사이트에서 계속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기간 동안 작성되거나 사용된 모든 문서, 청원서, 동의안의 전자 버전은 역사적 가치와 입법 과정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위해 교단 웹사이트에 보관됩니다.

b. 모든 버전은 역사적 및 입법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교단 웹사이트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됩니다.

VIII. 천거 및 선거

총회는 공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래의 위원단과 위원회에 다수결로 선출된 개개인들을 회원으로 선출합니다.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원 자격은 총회 대의원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A. **공천 절차(¶803.2).** 연회 및/또는 대표단은 총회 최소 180일 전에 위원회에 후보자 공천을 제출하도록 권장됩니다 (본인 동의하에), 각 연회는 해당 연회에 소속된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 또는 평신도 회원 중 자격을 갖춘 최대 20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각 후보자는 한 두 개의 연대 위원단, 협의회 혹은 위원회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각 후보자는 100단어 이내의 간략한 약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약력은 게시되는 후보자 리스트에 이름과 함께 인쇄됩니다.

B. **대표성.** 공천 위원회는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리적, 인종/민족, 성별, 연령의 다양성뿐 아니라 회원의 은사와 경험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투표를 할 때 이러한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C. **공천 위원회 절차.** 공천 위원회는 총회 개최 최소 120일 전에 각 위원회 또는 협의회 후보자 명단을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D. **추가 후보.** 공천 위원회 후보자 리스트가 발표된 후, 대표단은 최대 21일 이내에 추가 인물을 총회 총무에게 재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전체 후보 명단과, 연회들이 제출한 목록에 포함된 기타 모든 후보자 명단은 사전 총회 자료집에 게재될 것입니다. 천거 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은 별표로 표시됩니다.

E. **추가 회원.**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회나 위원단에 추가 회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I. **위원 선출이 필요한 협의회 및 위원단.**

1. 연대 협의회(¶807.2)
2. 전도, 선교, 교회 개척 위원단(¶808.1)
3. 제자도, 교리, 정의 사역 위원단(¶809.1)
4.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810.1)
5.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단(¶811.1)
6. 총회 위원단(¶812.1)
7. 에큐메니칼 관계 위원단(¶813.1)
8. 연회 위원단(¶814.2)
9. 글로벌 감독 위원단(¶605.1)

10. 연대 항소 협의회(및 대체 위원)(¶920)

IX. 대의원 비용

미국 내 대의원의 모든 여행, 숙박 및 일당 비용은 각 연회에서 부담하도록 권장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온 대의원들의 경비는 총회 또는 다른 연회와의 동반자 협약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경비로 항공료가 지원되는 대의원들의 경우, 총회위원회단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이 예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총회 개최지까지의 왕복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가장 경제적인 조건으로 직항 또는 이에 준하는 일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 외부의 연회에서 온 대의원에게는 총회 개최 예정일 전후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착 및 출발을 위한 추가 경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회의 전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식비와 숙박비를 자비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대의원이 동일한 차량으로 총회 개최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주차비, 통행료, 그리고 총회위원단이 공지한 기준 금액에 따른 주행 거리 비용을 포함한 실제 여행 경비를 상환받게 됩니다.

X. 대의원 조직

A. 각 대표단은 대표단 또는 연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각 대표단 단장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B. 다음 사항들은 대표단장의 책임이지만 이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체 대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총회를 앞두고 총회 기간 동안 각자의 책임에 대해 안내합니다.
2.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등 총회와 대의원 간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대의원들과 함께 총회의 조직과 우리의 공동 삶을 위한 언약 계획을 검토합니다.
4. 총회에 상정될 입법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5. 입법 위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요청된 대의원 선호를 제출해 주세요.
6. 대표단과 연회가 총회 협의회 및 위원회 후보를 제출하는 절차를 촉진합니다.
7. 자격 증명 팀에서 개발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적절한 경우 입법 및 본회의에서 대체 대의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XI. 청원 경찰, 페이지 및 회의 전문의원

A. 총회 위원단 또는 그 지명자는 총회 현장에서 봉사할 마샬, 페이지, 회의 규정 전문가를 모집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샬과 페이지는 보상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봉사합니다.

B. 마샬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내에 허가받은 자만 출입하도록 하여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길 안내를 돕거나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C. 페이지는 자료 배포, 투표 안내원 역할(필요한 경우), 커뮤니케이션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 대의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회의 전문 의원은 본회의와 입법위원회 세션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 전문 의원은 총회 대의원이 아니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총회 예산에는 총회 참석 및 참여에 필요한 회의 전문 의원들의 경비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공동 삶을 위한 조직 계획 및 언약

I. 매일의 일정

의제 위원회는 매일 일정을 정하고, 모든 본회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본 회의는 통역 서비스와 협의 후, 전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저녁 회의 개최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II.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과 대체대의원은 대표단 의장이 해당 당사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된 순서대로 착석합니다. 대체의원은 대체하게 되는 해당 대의원의 좌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체의원은 대의원이 발표할 때 대신 대의원석에 착석할 수 없습니다. 좌석에 착석하도록 선택된 대체의원은 결석한 대의원과 동일한 신분(평신도 또는 목회자) 이어야 합니다.

III. 의회 절차

A. **목적.** 본 언약과 로버트 회의 규칙의 목적은 총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언약 또는 로버트 회의 규칙은 회의체의 결정 능력을 방해하거나 소수 의견을 침묵시키거나 어떤 사람 혹은 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의견이 들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본 언약에 규정된 공동 의사결정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그 정신을 따라 활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B. **합의.** 가능한 경우, 총회는 전체 교회의 일치를 구현하는 합의 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705.1에 따라, 총회는 로버트 회의 규칙과 회의에서 채택한 추가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C. **정족수.** 총회를 소집하여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그러나 정족수를 채우기 전에는 보다 적은 인원이 회의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족수 충족을 위해 날짜별로 휴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공식 기록(저널) 승인, 출석 점검 후 무기한 산회를 할 수 있습니다(¶705.2).

D. **동의 안건.** 입법 위원회의 90% 이상의 찬성을 받은 청원은 매일 시작되는 동의 안건으로 승인, 반대 또는 회부할 수 있으며, 대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 안건에서 해당 안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 **의제.** 의사일정 위원회는 매일 업무 시작 시 의사일정을 추천하며, 이는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 다수결 투표로 채택됩니다. 총회 서기는 오늘의 순서와 위원회 보고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유지하고 안내합니다. 의제로 상정된 안건은 채택된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심의되며, 다만 총회가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경우, 특정 안건을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심의할 수 있습니다..

F. **발표자.** 입법 위원회의 투표로 지지된 제안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지명자가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위원회로부터 소수 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서가 먼저 제시된 후, 위원회 안건에 대한 표결 이전에 그 소수 보고서가 제시됩니다(언약 III.14 참조).

G. **말하기.** 발언을 원하는 대의원은 먼저 사회자의 발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의 진행 발언이나 의사진행 질문이 아닌 한,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않는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대의원은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이름, 연회 회원 여부, 발언 이유를 먼저 밝히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자에게 허락 받은 대의원은 다른 이에게 발언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의장은 발언자를 지명할 때 회의장의 여러 구역을 고르게 고려하고, 글로벌 교회의 폭넓은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대의원 투표로 토론이 연장되지 않는 한, 동의에 대한 토론은 찬성 3회, 반대 3회로 제한되며, 각 발언은 3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어떤 대의원도 질문이나 잘못된 진술에 대한 답변이 아닌 한 동일한 동의안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단, 청원 또는 소수 의견 보고서를 제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은 표결 전에 최대 3분 동안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4.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 제한은 언제든지 본회의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 **토론 종료.** 이전 질문을 논하자는 동의는 토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제안에 대해 늘하던대로 최소 두 번의 찬성 및 두 번의 반대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동의안이 채택되려면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I. **회의 진행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제기하려는 대의원은 사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먼저 관련 규칙을 명기한 뒤 가능한 한 간결하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토론 없이 의장이 결정하되, 회의 전체의 자문이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회자의 판정에 대해 본회의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때 투표 전에 사회자와 항소인만 3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J. **동의안.**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재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제한됩니다. 위원회 또는 위원단으로 부터 오는 동의는 재청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모든 동의안과 수정안은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K. **선거.**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효 투표 수가 총 유효 투표 수의 필수 비율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면 유효한 선거로 간주됩니다. 투표가 유효하려면 투표용지에는 보궐 인원 수만큼의 후보자 표기가 필요하며, 한 후보자에게 1회 이상 또는 이미 선출된 인물에 투표해선 안 됩니다.

L. **투표.** 투표는 전자 투표 또는 거수 투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대의원은 회의장 내에 있어야 투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황상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직후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든 어느 대의원이든 숫자를 세어서 표결하자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 투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표는 기립 투표로 이루어지며 안내원들이 개표위원 역할을 합니다. 전자 투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비밀 투표는 다수결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페이지들은 비밀 투표의 개표위원을 맡습니다.
3.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동의안은 가결됩니다:
    a. 대의원이 아닌 사람은 의장의 초청이나 3분의 1의 찬성으로 입법 위원회에서 발언하도록 초대될 수 있습니다.
    b. 가부 동수로 표결이 나올 경우, 사회자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c.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i. 최초 채택 후 규칙을 채택, 일시 중단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는.

ii. 헌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iii. 오늘의 특별 안건을 보류하기 위해.

iv. 이전 질문에 대한 요청을 유지하려면.

v. 채택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여 안건을 다루기 위해.

vi. 본 규약에 명시된 시간 외에 세션을 유지하려면.

M.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의안.** 다음 동의안은 토론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1. 최종 회의 종결 이외에, 자격 요건이 안되는 휴회를 위해
2. 규칙을 일시 중단하기 위해
3. 동의를 상정하거나 상정된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
4. 질문 종결 동의를 적법하게 요청하기 위해.
5.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동의를 재고하기 위해.
6. 토론 시간을 제한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7. 기도로 분별 시간을 위한 일시 중단을 위해.

N. **대체안 및 소수 보고서.**

1. 결의안이나 청원은 대체안이 해당 주제와 관련이 있고, 본안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닌 대안일 경우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입법 위원회 소수 의견에서 제기된 대체안은 소수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되며, 입법 위원회 다수 의견과 동시에 제시됩니다.
2. 우선 본안 또는 입법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대체안이 제시됩니다. 본안은 우선 제안된 모든 수정안을 받아들여 다루어진 후에 진행됩니다. 그 후 대체안은 제안된 모든 수정안을 받아들여 다루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안을 본안 대신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대체안 동의가 과반수로 통과되면, 대체안이 본안이 됩니다. 대체안 동의가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하면, 원래의 본안이 계속 유효하며 최종적으로 처리가 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4. 대체안에 관한 안건에서는 양측에서 각각 두 명 이상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 질문 종결 동의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5. 소수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해당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조치가 이루어진 후 1시간 이내(휴식 시간 제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입법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수 보고서 제출 통보에는 해당 제안에 반대표를 던진 5명 또는 입법 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10% 중 더 적은 인원의 서명이 필요하며, 해당 인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서면 요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6. 통보(III.N.5) 후, 대의원들은 소수 의견 보고의 실제 제안 문구와 100단어 이내의 근거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수 보고서는 통보 다음 날의 인쇄 마감 시간까지 제출되어야 하

며, 단 그 날이 총회의 마지막 날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음 날이 총회 마지막 날인 경우, 소수 의견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되 늦어도 통지 당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일일 소식지와 별도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O. **재검토.** 총회의 결정에 대해 재고 동의는 다수 측에 투표했던 대의원이 제안하는 경우 언제든지 적법하게 상정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요청된 동의가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안건이었다면, 재고 동의 역시 토론 없이 처리됩니다.

P. **휴회.** 폐회 동의는 정식으로 인정된 대의원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의원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이 계류 중이거나 표결이 진행 중일 때, 이전 질문이 의결되어 후속 조치가 계류 중일 때, 휴회를 위한 동의가 부결되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안건 처리나 토론이 없을 때, 또는 총회 휴회 시각을 정하는 동의가 계류 중일 때.

Q. **미처리 안건.** 총회에 제출된 모든 유효한 청원은 입법 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승인, 거부 혹은 회부)되어야 합니다. 입법 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청원은 본회의에서 처리(승인, 거부, 회부)되어야 합니다.

IV. 총회에서의 예의

A. 총회의 대의원과 게스트는 항상 친절, 열정, 애정어린 대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모든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성경적 덕목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대의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 대의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총회장 제한 구역 내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의원은 단체 또는 위원회 진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총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B.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공간에서는 가상 전자 회의를 포함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시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의의 사회자는 재량으로, 회의 예의를 위반하는 사람(갤러리 포함)을 회의실 또는 온라인 모임에서 즉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는 한, 현재 회기(세션)에만 적용됩니다. 사회자가 특정인을 퇴장시키기로 한 결정은 과반수 찬성 투표로 번복될 수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이러한 위반자의 퇴출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대의원 업무에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이 있으면, 사회자는 언제든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총회의 세션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대의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세션은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되어야 합니다.

D. 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된 자료의 배포는, 그 배포가 대의원들의 개인적 공간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존중되고 비침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 또는 입법위원회의 회의장 경계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사용하지 않거나 수령하지 않은 물품들을 폐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E. 의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입법 자료가 방청석 안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배포가 허용됩니다. 입법 자료를 회의장 경계(bar) 안에서 배포하는 것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V. 계획 및 언약 수정

총회 개회 시 조직과 우리의 공동 삶을 위한 언약 계획의 채택은 3분의 2의 찬성표로 이루어지지만, 그 시점에서 제안되는 수정안은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승인됩니다. 최초 채택 후에는 계획과 언약의 수정, 변경, 중단은 총회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본 계획과 언약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모든 의회 상황에서는 총회가 최신판 로버트 회의 규칙에 의해 운영됩니다.